

심의위원 회피신청서

본인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안전의 심의에 대한 회피를 신청합니다.

- 안전명:
- 회피사유: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하도급 등을 수행한 경우
6. 해당 안전의 소방시설공사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7. 해당 안전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